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9. 15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9.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9. 9. 9.
-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9. 9.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채진묵 청소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동 조례 중 행정규제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삭제 및 완화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때 행하는 조치명령을 삭제(안 제11조)
- 대형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지도·감독회수를 "연4회(분기별 1회)"에서 "연2회(반기별 1회)"로 완화 함(안 제14조)
- 봉투판매인 준수사항중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 할 의무를 삭제(안 제25조)
- 규격봉투 현금교환시 동장에게 현금교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규격봉투 현금교환확인서를 발부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 및 동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으로 하고, 제5호 중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9. 9. 15. 이매숙 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 제2조제2항제3호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제6조제1항 관련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안)제2조제3호및동조제5호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중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으로 함.
- 안 제2조제5호중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는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9. 15.

제안자 : 시민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9.8.6 대통령령 제16506호)제2조제2항제3호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8.9 환경부령 제82호)제6조제1항 관련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제2조제3호 및 동조제5호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중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으로 함.
- 안 제2조제5호중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는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로 함.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와 동조제5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폐기물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
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
생되는"으로 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는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4. (생략)</p> <p>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_____</p> <p>_____</p> <p>1. - 2. (원안과 같음)</p> <p>3.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4. (원안과 같음)</p> <p>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9. 08.

의안 번호	
----------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동조례중 행정규제와 관련된 일부조항을 삭제 및 완화하여 과도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개정주요골자

-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때 행하는 조치명령을 삭제(안 제11조)
- 나. 대행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지도·감독회수를 “연4회(분기별1회)”에서 “연2회(반기별1회)”로 완화 함.(안 제14조)
- 다. 봉투판매인 준수사항중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 할 의무를 삭제(안 제25조)
- 라. 규격봉투 현금교환시 동장에게 현금교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규격봉투 현금교환확인서를 발부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

3. 개정근거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제2조, 제6조, 제12조, 제25조 및 제63조, 개정전 삭제된 제16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건설 폐기물등 영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을 “발생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사업장 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6호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을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 배출할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지역에는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 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등)구청장은 영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중 “연4회(분기별 1회)”를 “연2회(반기별 1회)”로 한다.

제16조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로 한다.

제25조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내지 제7호를 제4호내지 제6호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규격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32조제1항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63조제3항”을 “법 제63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관련 별지제8호서식 “규격봉투현금교환확인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생략)</p> <p>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건설폐기물등 영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4 (생략)</p> <p>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p> <p>1.~2.(현행과같음)</p> <p>3. “----- 발생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p> <p>4. (현행과 같음)</p> <p>5. ----- 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6. -----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p> <p>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되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1.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지역에는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 규격·재질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p> <p>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1.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지역에는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p> <p>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등)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자,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2조(사업장폐기물의처리등)구청장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6 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p>
<p>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수수료 과정의 적정 여부와 행정시시 이행상태등을 연 4회(분기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지도·감독)</p> <p>-----</p> <p>-----</p> <p>-----</p> <p>-----</p> <p>----- 연 2회(반기별 1회)이상-----</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생활폐기물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p>	<p>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제12조 ----- ----- -----</p>
<p>제25조(규격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규격봉투 판매인이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1.~3.(생략)</p> <p>4.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p> <p>5.~7.(생략)</p> <p>②(생략)</p>	<p>제25조(규격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 ----- ----- ----- -----</p> <p>1.~3.(현행과 같음)</p> <p>4.(삭제)</p> <p>4~6.(현행5.~7.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27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①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교환을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관할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교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별지6호서식의 규격봉투현금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④ 규격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현금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동장의확인서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수령받고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p>	<p>제27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운영 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p> <p>②~⑥(생 략)</p>	<p>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 ----- ----- ----- 제12 조----- -----</p> <p>②~⑥(현행과 같음)</p>
<p>제37조(청문)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생 략)</p>	<p>제37조(청문)①-----법 제63조제4항의 ----- ----- ----- ----- ----- ----- ----- -----</p> <p>②(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p> <p>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u>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u></p> <p>②~③ (생략)</p>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u>생활폐기물배출자로</u>-----</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u>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u>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p> <p>과태료부과기준(제14조제1항관련)</p> <p>1. 일반기준 가.~나. (생 략)</p> <p>2. 부과항목별 과태료 기준</p>	<p>[별표 3]</p> <p>과태료부과기준(제14조제1항관련)</p> <p>1. 일반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p> <p>2. 부과항목별 과태료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부 과 항 목</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부 과 금 액 (만 원)</th> </tr> <tr> <th style="width: 10%;">1차 위반</th> <th style="width: 10%;">2차 위반</th> <th style="width: 10%;">3차 위반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2. (생 략)</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3. <u>음식물쓰레기 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제2항)</u></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0</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td> </tr> </tbody> </table>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2. (생 략)				3. <u>음식물쓰레기 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제2항)</u>	30	50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부 과 항 목</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부 과 금 액 (만 원)</th> </tr> <tr> <th style="width: 10%;">1차 위반</th> <th style="width: 10%;">2차 위반</th> <th style="width: 10%;">3차 위반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1~2. (현행과 같음)</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삭 제)</td> </tr> </tbody> </table>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2. (현행과 같음)				(삭 제)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2. (생 략)																															
3. <u>음식물쓰레기 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제2항)</u>	30	50	100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2. (현행과 같음)																															
(삭 제)																															